

『하나의 정기예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

(2025.09.01 현재, 세전)

구 분	내 용	
상 품 특 징	기간별 고시금리를 적용하며, 계약기간 및 가입금액이 자유롭고 자동재예치를 통해 자금관리가 가능한 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 전용 정기예금 상품	
상 품 유 형	정기예금	
가 입 대 상	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	
가 입 금 액	1백만원 이상	
거 래 방 법	• 신규 : 스마트폰뱅킹(하나원큐) •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	
계 약 기 간	1개월 이상 5년 이내 일단위	
기 본 금 리	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 기간별 기본 금리 적용	
적 용 금 리	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고시한 계약기간별 금리로 가입 시 실제 적용금리 ※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 쿠폰을 적용한 경우, 쿠폰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제공됨	
세 제 혜 택	○	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
예금담보대출	○	납입액의 100%까지 가능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[유의사항]

※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(1599-1111,0,1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자계산방법	가입금액에 예치기간에 따라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	
중도해지금리	기간	중도해지금리
	1개월 미만	연 0.10%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
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0%
	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^(주1) x 경과율 ^(주2)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 (단위: 연, %)
(주1) 차등율: 기간(6개월 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을 참고 6개월 이상~9개월 미만 경과 시: 60%적용, 9개월 이상~11개월 미만 경과 시: 70%적용, 11개월이상 경과 시: 90% 적용 (주2) 경과율: 경과일수 / 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 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 예시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 시 1.564%로 적용		
만기 후 금리	• 1개월 이내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½ • 1개월 초과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¼	

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시 불필요한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이용시 휴면계좌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『하나의 정기예금』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(예시:유선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)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『하나의 정기예금』
- 상품특징 : 기간별 고시금리를 적용하며, 계약기간 및 가입금액이 자유롭고 자동재예치를 통해 자금관리가 가능한 하나원큐(스마트폰 뱅킹)전용 정기예금 상품
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증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 (2025.09.01 현재, 세전)

구 분	내 용	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	상품유형	정기예금
계약기간	1개월이상 5년 이내 일단위	가입금액	1백만원 이상
거래방법	●신규 : 스마트폰뱅킹(하나원큐) ●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		
이자지급방식	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		
기본금리	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		
적용금리	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고시한 계약기간별 금리로 가입시 실제 적용금리 ※신규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, 쿠폰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함 단,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 미적용		

가입금액에 대하여 신규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대하여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 (원미만 절사)

기간	중도해지금리
1개월 미만	연 0.10%
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0%
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^(주1) x 경과율 ^(주2)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 (단위: 연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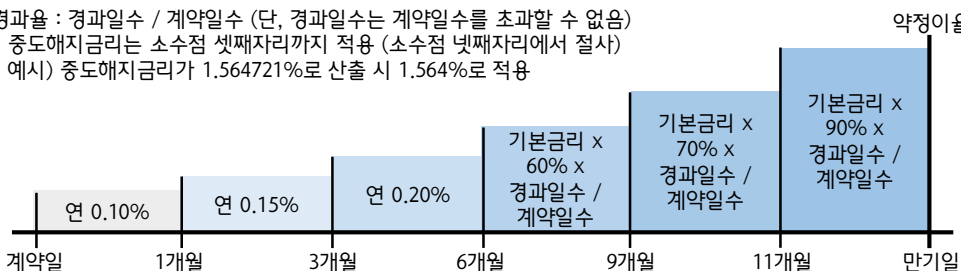
(주1) 차등율 : 기간(6개월 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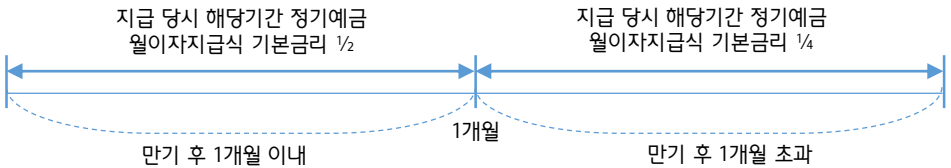
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 경과시	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 경과시	11개월 이상 경과시
60% 적용	70% 적용	90% 적용

(주2) 경과율 : 경과일수 / 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

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

예시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 시 1.564%로 적용



만기 후 금리	1개월 이내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/2 1개월 초과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/4 
이자계산방법	가입금액에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 (일단위 적용)
일부해지	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 (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) ※ 일부해지 후 잔액이 최저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,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재예치(갱신)	-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재예치 방식은 원금 또는 (세후)원리금 중에서 선택 가능 -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만기일(휴일인 경우 익역업일)에 재예치하며, 재예치 당일의 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 상품 상세페이지에 안내한 계약기간별 적용금리를 적용 ※ 원금 재예치시 세후이자는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. ※ 아래의 사유 발생시 재예치가 불가합니다. - 비과세종합저축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한도 변경시 -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- 판매중단 등 (단,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한 계좌에 한함)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-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(일부해지 포함)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-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
세제혜택	비과세종합저축 가능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.
양도 및 담보제공	-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 -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
계약해지방법	- 영업점,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스마트폰뱅킹) 및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 가능 ※ 비대면 채널에서의 해지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. -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가능하며(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),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
연계 · 제휴서비스	해당사항 없음
휴면예금 및 출연	-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-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.
위법계약해지권	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자료열람요구권	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-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1599-1111,0,1), 고객의소리 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 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(1599-1111,0,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부록 :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설 명
압류	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: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-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-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